

선 람	기관의 장



제 598 호

2004년 10월 22일 금요일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666호(차량초과에따른자동차말소등록예고) 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668호(인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을위한공고·열람) 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669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법공고) 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671호(공사입찰공고(전자입찰)) 1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672호(공사입찰공고) 1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673호(간석역일원하수박스증설공사폐기물처리용역전자입찰긴급공고) 1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674호(인천광역시남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개정안입법예고) 2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675호(인천광역시남동구청유소년축구단운영조례(안)입법예고) ... 2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677호(간석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을위한공람·공고) 3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680호(유기동물보호공고) 4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681호(수용재결신청열람공고) 4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682호(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공시송달공고) 4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688호(화물자동차운수사업(밤샘주차)사전통지서공시송달게시) 5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689호(전액관리위반에따른처분통지서공시송달게시의뢰) 5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690호(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인가를위한공람·공고) 57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04-58호(재건축정비사업사업시행변경인가) 61

회 람								
--------	--	--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4-666호

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원부 상 이해관계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2004. 11. 2일까지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폐차 말소등록 처리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4. 10. 19 ~ 2004. 11. 2(15일간)

2. 대상 자동차

자 동 차 등록번호	소 유 자		사건번호	이해관계인
	사용본거지	성 명		
인천5터3310	인천.남동.만수 81-92	이 응 두	98카단 47587	오 길 환 인천.서구.백석 128
인천7고5253	인천.서구.석남 223-354	동서기계 공업(주)	96카단 6370	한국나쉬유한회사 인천.남동.논현 430-7

3.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과 차량등록팀(☎453-3977)

2004. 10. 1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4-668호

인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공고·열람

「인천도시관리계획입안」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열람 하오니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있는 경우는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10. 19.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

☐ 도림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사 업 명 :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

(1) 건축물의 밀도계획 변경

- 용적률 : 당초 230%이하에서 250% 이하로 변경(단, 37블럭 공동건축에 한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354	15	국지 도로	467	장수동 132-5	장수동 77-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22	5-7	특수 도로	58	남촌동 556-1 (소2-17호선)	남촌동 558-1	보행자 전용도로			

2. 공고방법 : 일간신문(2개사), 남동구홈페이지 게재, 구보 게재,
구청 및 동사무소 게시판 게시

3. 열람기간 : 열람일로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032-453-2684, -92)

5. 첨부 : 도면개제 생략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입안 참여자

- 부구청장 이충양, 도시국장 장인철, 도시계획과장 홍종대, 도시관리담당 김기봉, 담당자 조성훈

○ 도시관리계획(도림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입안 참여자

- 부구청장 이충양, 도시국장 장인철, 도시계획과장 홍종대, 도시개발담당 이원배, 담당자 장덕진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필요한 향후 추진일정(예정)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04. 11~12월중), 결정고시(2004. 11~12월중)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4-669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0.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주 40시간 근무제의 전면시행하는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에 출근하는 직원에 대하여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하여 직원 복지를 향상 시키고자 함

3. 주요개정내용 :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4년 1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전화453-218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4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

☐ 제 안 이 유

-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 휴무토요일, 공휴일에 출근하는 직원에 대하여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하여 직원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 주 요 내 용

- 휴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구청장의 명령에 의하여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교통비 등 실비를 20,000원까지 지급하며, 그 범위를 정함.(안 제15조 제3항)
-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제1항)

☐ 본 문

“ 별 첨 참 조 ”

☐ 신 · 구 조문 대비표

“ 별 첨 참 조 ”

☐ 참고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46조1항, 제59조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3항,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휴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구청장의 명령에 의해 출근한 직원이 다음 정상근무일 또는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없을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통비 등 실비를 20,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1. 구 주관 행사의 진행을 위한 근무
2. 민방위 교육 중 일요교육의 진행을 위한 근무
3. 구청내 강당대여에 따른 진행을 위한 근무
4. 명절 연휴시 종합대책상황근무
5. 전염병 역학 조사를 위한 근무
6. 비상 방역 근무
7. 대집행
8. 설해, 집중호우, 태풍 등 재해 대비 비상근무
9.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한 비상근무
10. 행락질서 등 캠페인

④ 제3항의 지급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6조의2 중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일 휴무제)”로 한다.

동조 제1항 중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동조 제2항 중 “휴무제 및 전일 근무제의”를 “휴무제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② (생략) 〈 신 설 〉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휴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구청장의 명령에 의해 출근한 직원이 다음 정상근무일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없을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통비 등 실비를 20,000원까 지 지급할 수 있다. 1. 구 주관 행사의 진행을 위한 근무 2. 민방위 교육 중 일요교육의 진행을 위한 근무 3. 구청내 강당대여에 따른 진행을 위한 근무 4. 명절 연휴시 종합대책상황근무 5. 전염병 역학 조사를 위한 근무 6. 비상 방역 근무 7. 대집행 8. 설해, 집중호우, 태풍 등 재해 대비 비상근무 9.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한 비상근무 10. 행락질서 등 캠페인 ④제3항의 지급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신 설 〉 제16조의2(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 근무제)①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1 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 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6조의2(토요일 휴무제)①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 휴무제-----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04 - 671호

공 사 입 찰 공 고(전자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돌곶공원 조성공사”

1.2. 공사위치 : 인천 남동구 만수동 822-31번지 일원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 일

1.4. 설계금액 : 129,129,000원(추정가격117,390,000원 부가세11,739,000원)

※ 기초금액은 129,129,000원 입니다.

1.5. 사업개요

- 수목식재공 : 1식

- 시설물공 : 1식

- 포장 및 부대공 : 1식

1.6.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 2004년10월25일(월) 09:00 ~ 2004년10월30일(토) 11:00

1.7.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4년10월30일(토)12: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수 있습니다.

1.8. 설계도서 열람일시 및 장소 : 2004년10월25일(월)~2004년10월30일(토) [도시정비과]

※ 현장설명 : 생략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2.1.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까지 계속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된 사업소

(영업소)를 갖춘자로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업체로서,

2.2.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조경식재공사업면허소지업체

3.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같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적격심사 실시)

5.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제한적)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2. 입찰 후 낙찰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5일 이내 제출

5.3. 적격심사 서류제출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제136호,2004.2.6)

에 의한 시공경험 [당해공사 추정가격대비 최근 3년간(2001,2002,2003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누계액의 비율로 평가] 및 경영 상태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003년도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조경식제공사업)

·부채비율 192.01% ·유동비율 : 144.65%

6. 낙찰자 통보 예정일 : 2004. 11. 10한

7. 예정가격의 결정

7.1. 기초금액(129,129,000원)의 $\pm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7.2. 이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7.3. 예정가격의 87.745%를 적용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8.1. 본 입찰은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G2B 이용자 등록을 한자만이 입찰에 참여할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G2B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 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3. 낙찰자는 적격심사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 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8.4.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구 자치행정과(453-221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문의할 곳 : 남동구청 자치행정과 경리팀 (☎ 453-2210)

남동구청 도시정비과 공원팀 (☎ 453-2700)

2004년 10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리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04 - 672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차량감속 보도설치공사

1-2. 공사위치

- 인천 남동구 만수동 961번지 일원외 8개소

1-3. 공사개요

- 소형고압블럭포장(U형, 6-8cm) A=951.40㎡

- 블라드설치 (300×300×550) N=39EA

- 경계석 (화강석 200×150×1000) L=204m

- 경계석교체 (화강석 200×300×1000) L=179.3m

- 맨홀인상(M.S) N=19EA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1-5. 설계금액 : 87,388,000원 [추정가격 72,880,000원 부가세 7,288,000원
관급자재 7,220,000원]

※ 기초금액 : 80,168,000원 입니다.

1-6.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 2004년 10월25일(월)09:00 ~ 2004년 10월30일(토) 09:00

1-7.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4년 10월30일(토) 10: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8. 설계서 열람기간 : 2004년 10월25일(월) ~ 2004년 10월30일(토) [건설과]

1-9. 현장설명 : 생략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2-1.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2-2.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내에 주된 사업소(영업소)를 갖춘자로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업체이며,

2-3.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종중 철근.콘크리트공
사업면허 소지업체

3.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 5-1. 설계금액중 관급액을 제외한 기초금액(80,168,000원)의 $\pm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이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 으로 결정하고
 - 5-2. 예정가격의 87.745%를 적용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기준에 관한 사항
 - 6-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제한적)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6-2. 입찰 후 낙찰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5일 이내 제출
 - 6-3. 적격심사 서류제출
 - 6-3-1.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제136호, 2004.2.6)제2조제1항9호(추정가격2억원 미만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 ※ 2003년 경영상태 평균비율 : 부채비율 89.76%, 유동비율 182.93%
7. 낙찰자 통보 : 적격심사후 즉시 통보
 8. 기타 유의사항
 - 8-1. 본 입찰은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G2B(국가종합전자 조달)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자만이 입찰에 참여할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G2B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8-2.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 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3. 낙찰자는 적격심사 통보일로부터 7일(휴일제외)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내 계약을 체결 하지 못할 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8-4.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구 자치행정과(453-221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국가 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9. 문의할 곳

- 계약 : 남동구청 자치행정과 경리팀 (☎ 453-2210)
- 공사 : 남동구청 건설과 토목팀(☎ 453-2576)

2004년 10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임정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4-673호

간석역 일원 하수박스 증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전자입찰공고
(중앙공원 ~ 간석역남광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건명 : 간석역일원 하수박스 증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 다. 용역개요 : 폐기물운반(재활용) 3,580Ton
폐기물처리(재활용)
- 폐콘크리트(1,292Ton), - 폐아스콘(2,288Ton)
- 라. 용역금액 : 82,896,000원(부가세포함)
-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4. 10.20(수)09:00 ~ 10.25(월)10:00
- 바.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04.10. 25(월) 11:00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설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수 있음

사.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설계서로 같음

【전자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설계도서 및 시방서등은 우리구청
건설과 하수팀(☎032-453-2582)에 열람 및 문의】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 능력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주된 사무소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
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
야 합니다.
- 나.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때 대표
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3. 입찰방법

- 가. 본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
용자 등록을 한자만이 입찰에 참가할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인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송
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

- 가. 본건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적
격심사기준(행자부예규제135호:2004.2.06)」와 「지방자치단체기
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제137호:2004.2.6)」에 의하
여 심사합니다.
-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pm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중 4개를 추천하여 평균금액으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후 공개합니다.

라. 본건의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82,896,000원입니다.

마.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자는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집행후 낙찰하한선 미만(예가대비87.745%미만)투찰자는 적격심사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않습니다.

5.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7. 수행능력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10점) : 최근년도 부채비율(5점), 최근년도유동비율(5점)

나. 특별신인도(+2점) : 당해용역 최근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점을 가산하여 평가합니다.

(단, 가산점(+2)은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등을 입찰전에 숙지하시고 입

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참가 및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조회,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라며,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우리구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32-453-2542)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2 0 0 4. 10. 18

인천광역시남동구하수도사업특별회계기업출납원

인천광역시남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4-674호**

인천광역시남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0. 2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2. 개정취지**

- 교육경비보조를 받는 교육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코자 1회에 지원할 수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하고 학교별 교육경비보조를 단 한차례만을 지원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며
-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코자 함.

3. 주요내용

- 학교당 1회에 지원할수 있는 교육경비보조금 범위를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조정(안 제2조 제2항)
-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별로 단 1회만 지원토록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안 제2조 제2항)
- 보조사업의 범위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확대하는 조항신설(안 제3조 제6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년 11월10일까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453-216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인천광역시남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개정전문)

조례 제 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시군및 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비를 재원으로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이하 학교라 한다)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①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 세수입과 세외수입액을 합한 예산액의 3%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보조금 지원은 1개 학교에 1억5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4.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위원회 설치)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을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구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1/2이하이어야 한다.

1. 구 공무원
 2. 남동구의회 의원 3인
 3. 관할 교육구청에서 추천하는 교육자
 4. 기타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 주관과장이 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사업 심의
2.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예산집행시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보조금 신청) ①학교에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위원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후이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 할 수 없다.

제14조(보조금의 정산) 보조금을 집행한 기관은 정산내역을 60일 이내에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과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 폐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 급식 시설지원에 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4- 675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유소년축구단운영조례(안)입법예고

인천광역시남동구청유소년축구단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0.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유소년축구단운영조례(안)
2. 제정취지 : 2004년 5월 남동구유소년축구단을 창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운영규정이 없어 조례 제정으로 향후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관심으로 좋은 실적을 올려 우리구 위상 제고와 나아가 우수한 선수로 육성 축구발전에 기여코자 동 조례를 제정

3. 주요제정내용 : “본문”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년11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문화홍보실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전화032-453-211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유소년축구단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시 : 2004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정이유

2002한·일월드컵 4강신화로 전국민이 하나가되는 감동과 축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대두되어 어릴적부터 체계적인 연습과 기량을 갈고 닦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금년 5월 남동구청유소년축구단을 창단 하였음. 창단이후 축구단은 각종대회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운영규정이 없어 조례 제정으로 향후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관심으로 좋은 실적을 올려 우리구 위상 제고와 나아가 우수한 선수로 육성 축구발전에 기여코자함.

☐ 주요내용

- 축구단 구성(안 제2조의제1호)
- 감독및코치의 자격기준 (안 제3조의 제1항)
- 감독및코치의 위촉기준 및 기간(안 제4조의 제1항,제2항)
- 훈련및대회출전 실시(안 제8조 제1항,제2항)
- 축구단운영 실비보상금 지원 범위(안 제9조 제1항)

☐ 본 문 : "별첨"

☐ 참고사항 : "부평구어린이축구단운영지침"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유소년축구단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청 유소년축구단(이하 축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축구단은 문화홍보실 소속하에 두며 구단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구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감독 및 코치 각 1인과 60명 이내의 선수로 구성한다.
2. 축구단의 임원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으로 단장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단장”이라한다), 부단장은 부구청장, 간사는 문화홍보실장으로 하고, 임명직으로 감독 및 코치 각 1인으로 단장이 위촉 한다.
3. 선수는 각 학년별 10명내외 총60명이내로 구성한다.
단, 대회 출전시에는 정예선수 45명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자격)

- ① 감독 및 코치는 25세이상 55세이하로 인천광역시남동구 관내 거주자 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 ② 선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제4조(위촉 및 선발)

- ① 감독 및 코치의 위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장이 추천한자

2. 남동구체육회 또는 남동구축구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자
3. 기타 지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감독 및 코치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선수의 선발은 결원 발생시 충원필요에 따라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중 실기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제5조(위촉 및 선발시 구비서류)

- ①감독 및 코치의 위촉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지 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
 2. 이력서
- ②선수 선발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지 2호서식에 의한 추천서
 2. 부모동의서

제6조(해임)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감독, 코치 및 선수는 축구단에서 단장이 해임한다.

1. 지도자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2. 축구단 운영에 물의를 일으키는 자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
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자
5. 자의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자

제7조(복무)축구단의 감독 및 코치의 복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감독은 선수발굴, 육성 및 지도.감독의 책임을 지며, 선수훈련 및 경기를 총감독한다.
- 2.코치는 선수의 관리, 훈련, 경기지도, 체력관리 등을 담당하며, 별지3호서식에 훈련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훈련 및 출전)①선수의 훈련은 단장의 명을 받아 감독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②선수의 훈련은 단장이 지정하는 연습장에서 주3회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3회 실시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선수들의 체력보강과 기술을 연마하기 위하여 연2회(하계, 동계)전지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감독은 전지훈련 및 대회참가 계획을 행사 15일전까지 단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보상) 구청장은 축구단 운영 경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감독 및 코치 수당----“별표1”
2. 대회출전비 및 식비
3. 운동용품
4. 피복 구입비등(유니폼,츄리닝-1년에 각 2벌, 축구화 등 경기용품)
5. 감독, 코치, 선수들의 상해보험료
6. 입상보상금-----“별표2”
7. 전지훈련 경비(하계,동계-2회)
8.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학부모회) 축구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 1.학부모회는 축구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되 자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2.학부모회의 회장 및 총무는 감독이 지명한다.

제11조(준용) 인천광역시남동구유소년축구단의 구성 및 운영 시에도 이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남동구청유소년축구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상기자는 유소년(녀)들을 지도하는 능력이 탁월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유소년
(녀)축구단 감독(코치)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체육회수석부회장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축구연합회장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추 천 서

○ 학 교 명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상기자는 _____선수로서 우수한 자질과 경기력을 보유하여 이에 추천합니다.

인천광역시 ○○○학교장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학부모동의서 첨부

【별지3호서식】

훈 련 상 황 기 록 일 지

【훈련일자 : 200 . . ()요일】

시 간	: ~ :	장 소		결 재	코치	감독	문화홍 보실장
총 원		참석인원					

주요훈련내용

특이사항:

【별표1】

감독 및 코치의 수당

구분	금액(원)	기준	비고
감독	60,000	훈련1일당	
코치	40,000	"	

【별표2】

입상보상금 지급기준

지급기준(전국대회 규모)				지급기준(인천,경인지역)				비고
구분	지급액(원)			구분	지급액(원)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감독	3,000,000	2,000,000	1,000,000	감독	400,000	300,000	200,000	
코치	2,000,000	1,000,000	500,000	코치	300,000	200,000	100,000	

※비고

-전국대회규모 : 전국단위대회,

-인천,경인지역:인천관내,수도권지역단위대회를 의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04 - 677 호

간석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공람·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기에 동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공람 하오니 이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한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년 10 월 20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I. 공고내용

- . 정비사업의 명칭 : 간석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정비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간석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번지 일원	71,241	신 설

- . 정비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계획
가. 정비구역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71,241	100.0	
공 동 주 택 용 지	소 계	48,131	67.5	
	아 파 트	6,999	9.8	
	생활편익시설	400	0.6	
	어린이놀이터	3,146	4.4	
	휴게시설	815	1.1	
	광 장	2,493	3.6	
	관리/노인정	459	0.6	
	경 비 실	54	0.1	
	주 차 장	3,344	4.7	- 지하주차장 : 31,478㎡
	기타면적	30,421	42.7	- 단지 내 도로, 녹지 등
근린생활시설용지		573	0.8	
학 교		12,087	17.0	
녹 지		192	0.3	
도 로		8,894	12.5	
교 회		1,364	1.9	- 간석교회 부지 존치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 거 지 역	소 계	71,241	-	71,241	
	준 주 거 지 역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224번지일원	71,241	감) 71,241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224번지일원	-	증) 71,241	71,241

2)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224번지일원	준주거 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71,241	250이하	• 남동구 간석지구 일원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다.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24	간석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910-6 번지일원	26,700 (3,488)	890	양측 15	인고109 1999.9.2	

※ ()는 구역내 면적임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1) 교통시설 (도로)

•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9 (4)	1,767 (665)	14,938 (8,810)	-	-	-	3 (2)	833 (651)	10,341 (8,685)	6 (2)	934 (14)	4,597 (125)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1 (1)	484 (484)	7,492 (7,322)	-	-	-	1 (1)	484 (484)	7,492 (7,322)	-	-	-
소로	8 (3)	1,283 (181)	7,446 (1,488)	-	-	-	2 (1)	349 (167)	2,849 (1,363)	6 (2)	934 (14)	4,597 (125)

※ ()는 구역내 도로 연장 및 면적임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 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1	15	집 산 도로	484 (484)	대 1-14	대 1-13	일 반 도로			지구외: -
기정	소로	2	56	8	국 지 도로	130	소 2-292	소 3-51	일 반 도로		경고277 (77.10.11)	
변경	소로	2	56	8	국 지 도로	288 (167)	중 2-1	소 1-5	일 반 도로			지구외: 121m
기정	소로	2	227	8	국 지 도로	64	소 3-64	소 3-57	일 반 도로		경고277 (77.10.11)	
변경	소로	2	227	8	국 지 도로	61 (-)	소 3-64	중 2-1	일 반 도로			지구외: 61m
기정	소로	3	51	6	국 지 도로	364	대 1-13	대 1-14	일 반 도로		경고277 (77.10.11)	
변경	소로	3	51	6	국 지 도로	107 (-)	대 1-13	소 2-56	일 반 도로			지구외: 107m
기정	소로	3	52	6	국 지 도로	470	대 1-13	간석동 37-1	일 반 도로		경고277 (77.10.11)	
변경	소로	3	52	6	국 지 도로	303 (-)	중 2-1	간석동 37-1	일 반 도로			지구외: 303m
기정	소로	3	53	6	국 지 도로	550	간석동 지구계	간석동 224-677	일 반 도로		경고277 (77.10.11)	
변경	소로	3	53	6	국 지 도로	464 (10)	간석동 지구계	중 2-1	일 반 도로			지구외: 454m
기정	소로	3	54	6	국 지 도로	89	소 3-57	소 3-52	일 반 도로		경고277 (77.10.11)	
변경	소로	3	54	6	국 지 도로	31 (-)	중 2-1	소 3-52	일 반 도로			지구외: 31m
기정	소로	3	57	6	국 지 도로	420	대 1-13	대 1-14	일 반 도로		경고277 (77.10.11)	
변경	소로	3	57	6	국 지 도로	29 (-)	대 1-13	간석동 225-238	일 반 도로			지구외: 29m
폐지	소로	3	58	6	국 지 도로	120	대 1-14	간석동 224-253	일 반 도로		경고277 (77.10.11)	
기정	소로	3	59	6	국 지 도로	168	소 3-51	소 3-64	일 반 도로		경고277 (77.10.11)	
변경	소로	3	59	6	국 지 도로	42 (4)	중 2-1	소 3-64	일 반 도로			지구외: 38m

※ ()는 구역내 도로 연장임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2-1	- 노선신설 - 폭 : 15m - 연장 : 484m	남동구 간석동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공동주택 주진입도로 확보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도모를 통한 교통소통 제고를 위해 노선신설
소로 2-56	소로 2-56	- 노선변경 - 폭 : 8m - 연장 : 130m→288m	남동구 간석동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공동주택 주진입도로 확보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도모를 통한 교통소통 제고를 위해 노선연장
소로 2-227	소로 2-227	- 노선변경 - 폭 : 8m - 연장 : 64m→61m	남동구 간석동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공동주택 주진입도로 확보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도모를 통한 교통소통 제고를 위해 노선축소
소로 3-51	소로 3-51	- 노선변경 - 폭 : 6m - 연장 : 364m→107m	남동구 간석동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공동주택 주진입도로 확보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도모를 통한 교통소통 제고를 위해 노선축소
소로 3-52	소로 3-52	- 노선변경 - 폭 : 6m - 연장 : 470m→303m	남동구 간석동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공동주택 주진입도로 확보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도모를 통한 교통소통 제고를 위해 노선축소
소로 3-53	소로 3-53	- 노선변경 - 폭 : 6m - 연장 : 550m→464m	남동구 간석동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공동주택 주진입도로 확보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도모를 통한 교통소통 제고를 위해 노선축소
소로 3-54	소로 3-54	- 노선변경 - 폭 : 6m - 연장 : 89m→31m	남동구 간석동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공동주택 주진입도로 확보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도모를 통한 교통소통 제고를 위해 노선축소
소로 3-57	소로 3-57	- 노선변경 - 폭 : 6m - 연장 : 420m→29m	남동구 간석동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공동주택 주진입도로 확보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도모를 통한 교통소통 제고를 위해 노선축소
소로 3-58	-	- 노선폐지 - 폭 : 6m - 연장 : 120m	남동구 간석동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공동주택 주진입도로 확보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도모를 통한 교통소통 제고를 위해 노선폐지
소로 3-59	소로 3-59	- 노선변경 - 폭 : 6m - 연장 : 168m→42m	남동구 간석동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공동주택 주진입도로 확보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도모를 통한 교통소통 제고를 위해 노선축소

2) 공간시설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녹지	경관녹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37-75번지 일원	-	증) 192	192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 고
1	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192 ㎡	• 남동구 간석동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경관녹지 신설	

3) 공공·문화 체육시설 (학교)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1	학교	초등학교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225-145번지일원	-	증)12,087	12,087		

•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 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 고
1	학교	• 초등학교 신설 - 면적 : 12,087㎡	• 남동구 간석동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공동이용시설	면 적		개소	비 고
	㎡	평		
생활편의시설	400	121.00	2	-
어린이놀이터	3,146	951.67	3	-
휴게시설	815	246.53	2	-
광장	2,493	754.13	3	-
관리/노인정	459	138.85	1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건축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동주택	지정용도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중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건 폐 율	- 25% 이하	
	용 적 율	- 250% 이하	
	높이/층수	- 17~25층 (배치동수 : 15개동)	
	연 면 적	- 152,709㎡(46,194.5평)	
	배 치	- 건축선을 지정하여 가로변의 개방감 확보 - 주변의 아파트군과 조화로운 배치계획 수립 - 조망권 및 개방감확보를 위한 건축선(3m)적용	
	형 태	- 당해구역 주변으로 개발된 고층 고밀의 아파트 군과 조화시킴 - 도시경관의 악화로 인한 도시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 및 훼손을 방지	

□.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특이사항 없음

□. 정비사업 예정시기

: 2005년 ~ 2010년 12월 31일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1항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에 따른
전면매수에 의한 기존 건축물 철거 후 공동주택건설(아파트)

II.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도서 : 개재생략

III. 주거환경개선구역의 토지(사용 또는 수용할)조서 : “불임”

IV.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V. 공람장소 :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 032-453-2680)

간석3동 사무소 (☎ 032-453-3740)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4-680호

유 기 동 물 보 호 공 고

동물보호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유기된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반환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10월 2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04. 10. 20. ~ 2004. 11. 19.(1개월간)

2. 보호중인 유기동물

연번	종 류	성별	추정 연령	체중 (kg)	발견장소	포획일시	외형상 건강상태	비고
243	개 (페키니즈)	암컷	3	6	간석4동 석정초교	2004.10.2	양호	
244	개 (시츄)	수컷	4	7	만수2동 신대동APT	2004.10.5	양호	
246	개 (코카스페니얼)	암컷	2	8	간석3동 인천지하철건설본부	2004.10.7	양호	우측귀 찰과상
249	개 (시츄)	암컷	3	7	간석3동파출소	2004.10.9	양호	
252	개 (시츄)	암컷	2	5	간석2동 광명APT	2004.10.11	양호	
255	개 (코카스페니얼)	수컷	3	10	도림주공1단지	2004.10.15	양호	
256	개 (포인터잡)	암컷	3	4	만수6동 담방마을	2004.10.16	양호	
257	개 (요크셔테리어)	수컷	1	3	간석4동 영남APT	2004.10.16	양호	

3. 반환청구기간 : 2004. 11. 19일까지

4. 참고 및 기타사항

- 반환시 동물보호법 제7조제5항 규정에 의거 보호기간동안 소요된 경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알 수 없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7조제3항, 제4항 규정에 의거 소유권 남동구청에 귀속되며, 귀속된 동물을 동물원, 동물애호가 및 단체에 기증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지역경제과 농수산팀(453-2537)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4-681호

수용재결신청열람공고

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인천대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에 따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계가 있으신 분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10. 2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인천대공원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기업자) : 인천광역시장(동부공원사업소장)
 3.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일원
 4. 사업내역 : 면 적 2,943,680㎡
사업기간 1997. 10 ~ 2006. 12. 31
 5. 열람기간 : 2004. 10. 20 ~ 2004. 11. 3
 6.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과
- 전 화 : 032)453-2664
 7. 의견서 제출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남동구청도시계획과
 8. 수용대상 내역 : “별 첨” 물건내역 참조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 453-26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제시액 조서(토지)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연번	수용할 토지의 표시				사업시행자 제시액		소유자		관 계 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단가 (원)	금액 (원)	성명	주소	영리 관계	직책
1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283-2	답	전	118,267	79,356,930	김재성	인천 남동구 만수5동 906-2		소 주
				하	여	백				

사업시행자제시액 조서(지장물)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연번	수용할 물건의 표시			사업시행자 제시액		소유자		관 계 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	단가 (원)	금 액 (원)	성명	주 소	종류 소재지
1	장수동	283-2	작업정(목조스레트)	113.4	61,667	6,992,990	김재성	인천 남동구 민수5동 906-2	
			창고(비닐하우스,보온덮개)	62.04	30,000	1,861,200			
			담장(h=2m),목재합판	25㎡	일괄	258,330			
			소 계			9,112,520			
			창고(천막하우스)	13.8	30,000	414,000			
2	장수동	283-2	창고(목조합판)	29.96	40,000	1,198,400	최재연 (강원농정)	인천 남동구 장수동 283-2	
			계사(양철판)	1식	일괄	1,616,660			
			건사 이동식철망(1.5 × 2m)	30개					
			영업용냉장고 대형	2대					
			탈수기	1대					
			절단기	1대					
			담장 목재합판(H=2)	25M	일괄	258,330			
			강원농정 영업보상(축산업)	1식	61,667	11,466,660			
			육건(성건)	400두					
			축염소	18두					
			합 계			14,954,050			
			소 계			24,066,570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4-682호

방치차량 강제처리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 관내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의거 자진처리를 명령하오니 차량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이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모든 의무와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차량은 강제처리(폐차·말소)됨은 물론 차량소유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85조에 의거 범칙금통고 및 동법 제88조에 의거 사건송치(1년이하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됨을 알려드립니다.

2004년 10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4. 10. 22. ~ 2004. 11. 5.
 2. 강제처리(강제폐차·말소 및 사건송치) : 2004. 11. 5. 이후
 3. 폐차예정장소
 - 인천폐차사업소 (인천.남동구 논현동 423-2 ☎032-814-7077)
 - (주)서울폐차사업소 (인천.남동구 고잔동 184 ☎032-442-6660)
 -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인천.남동구 고잔동 726-7 ☎032-834-1577)
 4. 대상차량 : 내역별첨
 5. 문의처 : 남동구청 교통과 차량관리팀(☎ 032-453-2751~4)
-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방치차량 강제처리 공시송달 공고조서

번호	차량번호	차종	소유자		방치장소	이 해 관 계 인
			성명	주소		
154	서울42마 3511	와이드 봉고	송영상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222-53	구월1동 1190 한민교 회영 놀이터	인천남동구 서울마포구청장(교지) 서울서대문경찰서(교통) 서울서대문구청장(세이,교지) 인천남구청장(교통) 인천동구청장(건교) 인천부평구청장(교행) 인천연수구청장(지교) 종남서산경찰서장(교통) 인천남구청장(교통) 인천부평구청장(지교) 인천서구청장(지교,징수) 인천서구청장(징수) 인천서부경찰서장(교통) 인천지방법원 코오롱할부금융(주): 서울 강남 구 대치동 943-19 대전동부경찰서장(교통) 서울관악구청장(교지) 서울은평구청장(교지) 서울중구청장(교지) 인천계양구청장(교행) 인천남동구청장(교통) 인천차량등록사업소장(차량)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남동지사장(자정) 서울종로구청장(교지) 인천광역시청(교지) 인천남구청장(지교)
155	인천30거 2108	그랜저	김영철	서구 가정동 284-401 뉴서 울@1/1508	논현동 논현 초등학교 건 너편 노인정 앞	
158	인천31구 3570	쏘나타	이민호	남동구 구월동 1309-27 인성 빌라 5/B01	구월동 1309-27	
				연수구 연수동		

방치차량 강제처리 공시승달 공고조서

번호	차량번호	차종	소유자		방치장소	이 해 관 계 인
			성명	주소		
159	3983	쏘나타	송진우	501-4 (102 호)	1309-27	인천남동구청장(교통,세무) 인천연수구청장(세무,지교) 인천지방법원 삼성캐피탈(주):서울 중구 태평로2가150-21 삼성생명빌딩24층 인천차량등록사업소장(차량)
162	대전31고 1914	티코	이혜숙	대전 대덕구 비래동 47-1 현대@ 2/203	구월1동 김스클럽 국민은행 뒷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점 (주)대운상호저축은행:전남 광양시 광양읍 묵성리908 대전대덕구청장(지교) 대전남동구청장(교통) 대전북부경찰서장(교통) 대전중구청장(교통) 대전지방법원 삼성카드(주):서울 중구 을지로1가 87번지 대전지방법원 삼성캐피탈(주):서울 중구 태평대 대전지방법원 (주)한주상호저축은행:충남 연기군 조치원을 원리15-6 전북진안경찰서장(교통)
162	대전31고 1914	티코	이혜숙	대전 대덕구 비래동 47-1 현대@ 2/203	구월1동 김스클럽 국민은행 뒷길	전북진안군수(문관)
169	인천2러 9715	수퍼살롱	정순현	남동구 구월동 1354-15	구월3동 1364부근 구월공원 주차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남동지사장(자정,징) 인천남동구청(징수,교통,지교) 인천부평구청장(교통) 인천차량등록사업소장(차량) 국민건강보험강동지사장(자정)

인천남동구

2004년

방치차량 강제처리 공시송달 공고조서

번호	차량번호	차종	소유자		방치장소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171	서울3거 3027	쏘나타 2	고영태	서울 마포구 염리동 81-10	구월4동 1309-27앞 도로	서울강동구청장(민원) 서울강동구청장(세관, 교행, 민원) 서울관악구청장(교지) 서울광진구청장(세일, 세이, 교지, 교통) 서울동부경찰서장(교통) 서울마포구청장(세이, 교지) 서울성동구청장(교지) 서울지방법원장 (주대 우캐피탈:대전 대덕구 송촌동292-3
176	서울2러 4615	쏘나타	윤인구	서울 강서구 등촌동 647- 65동명타운 B/103	구월1동 1224-1	서울강서구청장(세이, 교통) 서울영등포구청장(교지) 인천남동구청장(교통) 인천남동구청장(교통) 인천서구청장(교통) 천안경찰서장(교통) 서울동대문구청장(교관) 서울종로구청장(교지) 서울중랑경찰서장(교통, 교행) 서울중랑구청장(세이, 교행) 성남수정구청장(건설) 인천광역시청(교지, 교기) 인천남구청장(교통) 인천남동구청장(교통) 인천광역시청(주관) 인천남구청장(세무, 지교, 교통) 인천남동구청장(교통)
177	서울54너 2274	폭포드	유병욱	서울 중랑구 면목동 87-53	구월3동 1359-2 영성 할인마트 입 구	
178	인천30라	프린스	김희순	남동구 간석동 466-7 영진맨	간석1동 415 예술고담 옆	

2004년

인천남동구

방치차량 강제처리 공시송달 공고조서

2004년 번호	차량번호	차종	소유자		방치장소	이 해 관 계 인
			성명	주소		
				선B/01	도로	인천동구청장(지교)
179	인천31두 9537	에스페 로	조흥제	남동구 간석동 412-11 남광 빌라 B/201	간석1동 415 에 솔고담 옆 도로	인천부평구청장(지교, 교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남동지사장(자정) 시흥시장(교통, 교지) 인천남동구청장(세무)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남동지사장(자정) 부천소사구청장(환위) 부천시교통지도사업소장(교통지도, 교지) 부천시장(민원, 징수) 안성경찰서장(교통) 안성군수(재무, 교통, 환위, 세무) 인천광역시장(교기)
180	경기8머 5748	1톤포 터	오철근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 동 112-5	만수동 복개 천 천국사우 나 앞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남동지사장(자정) 부천소사구청장(환위) 부천시교통지도사업소장(교통지도, 교지) 부천시장(민원, 징수) 안성경찰서장(교통) 안성군수(재무, 교통, 환위, 세무) 인천광역시장(교기)
180	경기8머 5748	1톤포 터	오철근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 동 112-5	만수동 복개 천 천국사우 나 앞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남동지사장(자정) 부천소사구청장(환위) 부천시교통지도사업소장(교통지도, 교지) 부천시장(민원, 징수) 안성경찰서장(교통) 안성군수(재무, 교통, 환위, 세무) 인천광역시장(교기)
182	인천35거 2540	쏘나타	송은주	연수구 선학동 386-11 우림 주택 204	만수동 복개 천 천국사우 나 앞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남동지사장(자정) 인천광역시장(주관) 인천연수경찰서장(교통) 인천연수구청장(지교, 세무) 인천지방법원 (위삼성캐피탈:서울 중구 태평 로2가150 인천차량등록사업소장(차량) 충남천안시장(교통) 서울구로구청장(세관) 서울노원경찰서장(교통) 서울노원구청장(세이, 교행, 세관) 인천남동구청장(교통) 인천광역시장(교기, 교통)
183	서울1더 8232	에스페 로	김장하	서울 노원구 상계동 670 주 공@ 903/1201	만수동 복개 천 천국사우 나 앞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남동지사장(자정) 부천소사구청장(환위) 부천시교통지도사업소장(교통지도, 교지) 부천시장(민원, 징수) 안성경찰서장(교통) 안성군수(재무, 교통, 환위, 세무) 인천광역시장(교기)

인천남동구

2004년

방치차량 강제처리 공시송달 공고조서

번호	차량번호	차종	소유자		방치장소	이 해 관 계 인
			성명	주소		
184	인천30모 6619	쏘나타	안광현	연수구 옥련동 581-6 대하과 크빌라 B/102	만수동 북개 천 천국사우 나앞	인천남구청장(교통) 인천남동경찰서장(교통) 인천남동구청장(교통,징수) 인천부평구청장(지교,교통) 인천서구청장(지교) 인천연수경찰서장(교통) 인천연수구청장(세무,지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박충흠: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340-13) 인천차량등록사업소장(차량)
185	인천80라 2970	프레지 오	정태연	남동구 구월동 1264-84 구삼 빌라 B/301	만수동 북개 천 천국사우 나앞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남동지사장(자정) 국민연금관리공단인천지사장(가이) 부천교통지도사업소(교통지도) 서울서대문구청장(교지) 안산시청교통종합민원실(교통) 안양시동안구청장(건교) 안양시만안구청장(건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주관) 인천남동경찰서장(교통) 인천남동구청장(환위,세무,교통) 인천차량등록사업소장(차량)
186	인천3고 1884	세피아	박용일	서구 가정동 5-66	만수동 북개 천 천국사우	인천서구청장(징수,세무,지교,교통) 인천지방법원 (최충섭 인천 동구 승림동 대우캐피탈(주) 대전 대덕 송촌동 292-3
189	경기81마 1275	포터 1.5	이기남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만수동 북개 천 천국사우	성남수정구청장(환위,건설,세무) 성남중부경찰서장(교통)

인천남동구

2004년

방치차량 강제처리 공시송달 공고조서

2004년

인천남동구

번호	차량번호	차종	소유자		방치장소	이 해 관 계 인
			성명	주소		
					성남중원구청장(건설)	

190	인천35라 2542	포텐사	여준석	남구 용현동 510-160	간석3동 179-6 태화 플라자 1층 주차장	국민건강보험인천남부지사장(지관) 서울지방법원 (주)우리은행:서울 중구 회현동 인천남구청장(세무, 교통) 인천동구청장(건설) 인천서구청(교통, 세무) 인천중구청(관교, 교복) 인천중무경찰서장(교통) 인천지방법원(김순국 인천 계양 계산동 인천차량등록사업소장(차량) 현대캐피탈(주)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23-4 인천남동구청장(정수, 환보, 지교) 인천차량등록사업소장(차량) 서울구로경찰서장(교통) 서울구로구청장(세관, 구봉, 민원어권) 서울양천구청장(교지) 서울영등포구청장(교지) 서울종로구청장(교지) 인천연수구청장(지교) 경기제7지구의료보험조합(정수) 경기파주시장(교통) 국민연금관리공단광명지사장(가일) 부천소사구청장(지경) 서울마포구청장(교통) 서울영등포구청장(교지)
191	인천7도 7654	소형화물	김진구	남동구 만수동 657	장수동 648-2	
193	서울46머 2094	스쿠프	UHAMM	서울 구로구 고척동 57-7	남동공단 148블록 1트	
194	경기89가 1417	와이드 봉고	(주)대보	경기 시흥시 신천동 84-5	남동공단 148블록 1트	

방치차량 강제처리 공시송달 공고조서

2004년 번호	차량번호	차종	소유자		방치장소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200	인천31구 5598	엘란트 라	김성훈	남동구 만수동 67-16	만수4동 85- 11 놀이터 옆 도로	서울용산구청장(교지) 시흥경찰서장(교통) 시흥시장(환경,세무,지경,교통) 서울마포구청장(교지) 인천남동경찰서장(경비교통) 인천남동구청장(교통,세무) 인천차량등록사업소장(차량)	인천남동구
03- 1159	인천33다 1390	쏘나타 투	김규환	남동구 간석동 773-12 선경 빌라A-302	간석3동 774-8 팬더 @A동 옆 도 로	저당: 동양카드(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 압류: 인천남동구청(세무), 인천차량등록사 업소(차량), 국민건강보험인천남동지사(자 정)	
03- 1234	경기12- 1948	엘란트 라	김명균	경기 오산시 부산동778-1 주공@ 113- 1103	논현동553- 2 배아관노 래방 근방	양수인불명 자진말소 등록	
03- 1272	차대번호 불명	엑셀			남동공단 143블록1 북 트 협상스틸 앞 공터	차량색상 및 발견당시 외관상 특징: 짙색, 보닛열림, 앞뒤 옆 유리창 깨짐, 앞뒤 차폭 등 파손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04 - 688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체의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 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분명 및 수취인의 부재등으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04년 10월 22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송달대상자

- 인천 남동구 만수동 970-2호 16/4 대신다세대주택 401호
- 소유자 : 이 경 호 차량번호(인천86바5678)

2. 공시송달기간 : 2004. 10. 22 ~ 2004. 11. 12 (20일간)

3. 참고사항

: 처분사전통지서 수령자는 2004. 11. 12일까지 남동구청 교통과
(☎ 453-2743)로 오셔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04- 689호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제85조3항에 의거 전액관리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 받을 자의 주소불명 및 전출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4년 10월 22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고기간 :2004.10.22 ~2004.11.10(15일간)
2. 공시송달 및 통지사항

연번	성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자	비고
1	김기성	인천.부평구 부평동 672 -34 무궁화빌라B/B02	전액관리 위 반	과태료 25만원	2004.10.12	
2	전복남	인천.계양구효성동 272 -11	전액관리 위 반	과태료 50만원	2004.10.12	

3.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5조 규정에 의거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우리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4-690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명 : 구월동 1139번지 일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공사] 사업을 시행 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공람을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032-453-268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당해 도로개설 시행지구안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내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10. 22.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의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9번지 일원(시청앞 업무지구)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로(소1-26호선)
 - (2) 명 칭 : 구월동 1139번지 일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공사
3. 사업의 규모
 - 소로 1-26호선 : 폭원(B)=10.0m, 연장(L)=221.2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 88번지(만수동 1008번지)
5.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4. 10. ~ 200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7.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첨」
8. 열람기간 : 열람일로부터 20일간
9. 첨 부 : 관계도서(게재 생략)

□ 위 치 도



고	시
---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04-58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이화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변경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04. 10. 20.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이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이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 전재만)
신동아 건설주식회사 (대표자 : 김진천)
 - 주소 :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6-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7-2 한풍상가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남동구 간석동 616-7번지
102,365.99㎡
4. 건설주택의 규모 : 5동, 지하2층, 지상21층, 715세대
5. 사업시행기간 : 2004. 5 ~ 2007. 8
6. 주요변경내용
 - 사업시행기간 연장
변경전 : 2004. 5. ~ 2006. 12
변경후 : 2004. 5 ~ 2007. 8

